#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제55호

2018. 9. 10.

건 명	논산시 정책자문위 조례안(전략기획실)	원회 설치 및 운 )	연영 조례 일부개정
제안 및 제출자	논 산 시 장	제안연월일	2018. 8. 28.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18. 8. 28.

## 보 고 내 용

### □ 제안이유

○ 논산시 주요 정책인 국방혁신도시 유치 및 건설을 위하여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방혁신 관련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 조정(35명→50명 이내) : 안 제4조제1항 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신설(국방혁신분과) : 안 제8조 제1항 제6호

#### □ 검토의견

O 논산시 주요 정책인 국방혁신도시 유치 및 건설을 위하여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방혁신 관련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를 구성 하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56호

2018. 9. 10.

건 명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전략기획실)		
제안 및 제출자	논 산 시 장	제안연월일	2018. 8. 28.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18. 8. 28.

## 보 고 내 용

## □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논산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정책연구의 공개 목적(안 제1조)
- 논산시에서 정책연구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함
- 나. 정책연구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안 제4조)
- 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함.

	님토	의견
--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논산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

#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제57호

2018. 9. 10.

건 명	<b>논산시 시민소통위원</b> (전략기획실)	<u>[</u> 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및 제출자	논 산 시 장	제안연월일	2018. 8. 28.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18. 8. 28.

## 보 고 내 용

#### □ 제안이유

○ 주요정책의 입안과정부터 시민의 의견 및 자문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제안 수렴을 통한 시민이주인 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4조)
- 나. 위원장 및 회의 운영, 운영 및 분과위원회, 간사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 다. 위원의 권리와 의무, 의견청취, 사임,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 검토의견

○ 주요정책의 입안과정부터 시민의 의견 및 자문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제안 수렴을 통한 시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제58호

2018. 9. 10.

건 명	<b>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b> (전략기획실)		
제안 및 제출자	논 산 시 장	제안연월일	2018. 8. 28.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연월일	2018. 8. 28.

## 보 고 내 용

### □ 제안이유

○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 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 주요내용

#### 【충남연구원 개요】

O 연혁 : 1995년 도, 시·군 자본 100억원으로 설립(논산시 : 247백만원)

O 목적 : 도 및 시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대안제시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O 원장 : 권영현(충남연구원 연구실장)-원장 공개채용중

#### □ 충남연구원 출연의 배경

- O 충남연구원의 역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비 부담확대
- O 저금리 시대에 따른 기금 이자 수입 감소

※ 2017년 200,000천원 출연 ⇒ 충청남도의 시·군 출연 요청
□ 도내 시·군 출연금 납부 현황
○ 완료: 아산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계룡시, 부여군, 천안시

O 예정(추경): 보령시, 예산군

#### □ 출연계획

- O 출연금액: 50,000천원(2018년 2회 추경 편성 예정)
  - 전략기획업무-시정 종합기획 수립-시정기획업무추진-출연금-출연금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서산시(납부 순서)

#### □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 O 지역에 관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논산시 과제 수행 시 양질의 연구 수행 가능
  - 전략과제 연 1건, 현안과제 연 2건
  -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토 연 4~6건

#### ☞ 전략과제 및 현안 과제 수행 내용

-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추진계획 수립
- 논산시 제3기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 강경 근대역사자원 활용 자립형 공동체 형성)
-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부적면 복합 청사 신축, 강경젓갈축제 등 타당성 검토

#### □ 검토의견

○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